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의 쟁점

황현아 연구위원

-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의 경우 위 판결은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자차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
-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도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보다 우선한다는 취지임**

 - 위 판결의 취지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자차보험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자차보험계약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자차보험의 기능) 자차보험은 자기가 낸 사고, 즉 본인 과실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기 부담금도 자기 과실에 의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함**

 -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손해는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될 것이 전제되어 있음
-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 보험자의 비용 절감 및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음**

 - 자기부담금을 최종적으로 자차보험 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게 되면 자기부담금 약정은 무의미해짐
-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및 당사자의 의사) 자차보험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며, 당사자도 자기부담금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자차보험에 가입함**

 -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스스로 부담하며 사고 예방과 손해 방지에 힘쓰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절감하고자 하는 일반 보험계약자들의 인식과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됨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 측면은 물론 정책적 측면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

 - 화재보험에 관한 2014다46211 판결의 취지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음
 -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경우 보험료 인상 및 도덕적 해이 등이 발생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1. 검토배경



-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차량이 손상되어 본인의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면서 자기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그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하급심에서도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됨¹⁾
 - 반면, 반환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위 대법원 판례는 화재보험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음
- 본고에서는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판례를 근거로 피보험자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다고 볼 것인지를 검토함
 - 먼저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의 내용 및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이 문제되는 사례의 사실관계와 쟁점을 살펴봄
 - 다음으로 자차보험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당사자의 의사 등을 살펴 보고,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지를 검토함

2.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의 내용



- (사실관계 및 쟁점) 乙의 과실로 甲의 차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자신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 중 일부를 보상받은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문제됨
 - 乙(피고)의 과실로 甲(원고)의 차고에 화재가 발생하여 甲이 6억 6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됨
 - 甲은 자신이 丙보험회사에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3억 2천만 원을 보상받고 乙에게 나머지 3억 4천만 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때 甲이 乙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다음 3가지 쟁점이 문제됨
 - ① 乙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甲이 수령한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해야 하는지
 - ② 甲의 남은 손해액을 어느 범위에서 乙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25676 판결 등

- ③ 乙의 손해배상청구권과 丙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의 관계 및 丙의 대위권 행사 범위
- 이 중 자기부담금 환급과 관련된 것은 ② 및 ③의 쟁점임

■ (판시사항) 대법원은 ① 乙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甲이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해서는 안되고, ② 甲에게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에는 乙의 '손해배상책임액'(과실상계 등에 의해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 한도 내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③ 丙보험회사는 乙의 '손해배상책임액'과 甲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에 대해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①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보험금 공제 여부) 대법원은 '별도 보험계약에 의해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이므로 이를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라고 봄²⁾
 - 乙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甲이 수령한 보험금 3억 2천만 원을 공제해서는 안됨
 - 따라서, 乙의 손해배상책임액은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은 손해액 6억 6천만 원에 실화책임법에 따른 책임제한 비율 60%를 적용한 4억 원이 됨³⁾
- (② '남은 손해액'의 청구)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고도 '남은 손해액'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을 청구할 수 있음
 - 甲은 남은 손해액(3억 4천만 원)을 乙의 손해배상책임액(4억 원)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음⁴⁾
- (③ 보험자대위의 범위) 보험회사는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그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보험자대위라 함
 -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대위에 의한 구상권보다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⁵⁾ 보험자대위에 의해 보험회사가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피보험자의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에 한정됨⁶⁾

2) 기존에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 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으나(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27721 판결 등) 본 판결에 의해 판례가 변경됨. 본 판결이 전원합의체로 선고된 이유는 이 쟁점에 관하여 판례가 변경되었기 때문임

3) 실화책임법은 실화(失火)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 법원이 실화자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본 판례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자인 乙의 책임비율을 60%로 감경함

4) 참고로, '피해자의 손해액'과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은 구별됨.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시에는 피해자가 수령한 보험금을 공제하고 공제된 금액만큼은 보험자대위에 의해 그 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됨. 반면, 본 판결에 의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 산정 시에는 보험금을 공제하지 않게 됨

5)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참고로, 상법 제682조 제1항 단서는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가 우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수설 및 판례는 보험가액 중 일부만 보험에 부보하는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위 단서의 취지가 적용된다고 보고 있음(주석상법 제4편 보험(제2판), p. 511)

- 보험금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에 의해 취득한 권리와 피보험자 등이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가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경합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제3자의 자력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보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 것임⁷⁾
- 丙보험회사는 乙의 손해배상책임액(4억 원)과 甲의 남은 손해액(3억 4천만 원)의 차액(6천만 원) 범위 내에서 乙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즉, 乙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액 4억 원 중 3억 4천만 원을 甲에게 먼저 지급하고, 그 남은 금액인 6천만 원을 丙에게 지급해야 함

■ 대법원 판시사항 중 ③번의 취지를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적용하여,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을 상대방으로부터 우선 환급받도록 해야 하는지가 문제됨

- 특히 상대방 차량의 대물배상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할 손해를 자차보험으로 선처리 하는 경우가 문제됨

3. 자기부담금 환급 분쟁 사례 및 쟁점



■ (사실관계) A와 B의 쌍방과실 차대차 사고로 A의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가 발생하였는데, A는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선처리한 후 구상을 통해 정산하기로 함⁸⁾

- A와 B의 차대차 사고로 A의 차량이 부분 파손되어 수리비 4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과실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대물배상처리가 지연되자 A가 우선 자신의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함
- A는 자신이 가입한 X보험회사 자동차종합보험의 자차보험 및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수리비 400만 원 중 350만 원을 보상받고 자기부담금 50만 원은 스스로 부담함
 - A의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최소자기부담금)~50만 원(최대자기부담금) 범위 내에서 자기차량 손해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며, 본 사안의 경우 50만 원⁹⁾으로 산정되었음
- X(원고)는 B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회사인 Y(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근거하여 3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6)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6431 판결 및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에서 이러한 취지가 보다 명확해짐. 위 두 판결도 2014다46211 판결과 마찬가지로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의 보험자대위가 문제된 사례임

7) 주석상법 제4편 보험(제2판), p. 511

8) 이하의 사실관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9나25676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되, 이해의 편의를 위해 금액을 단순화 함

9) 4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80만 원)이 최대자기부담금(50만 원)을 넘어서므로 최대자기부담금으로 자기부담금이 산정됨

- (법원 판단) 법원은 A와 B의 과실비율을 15:85로 정하여 B(Y)의 손해배상책임액을 340만 원으로 산정한 후, 그 중 자기부담금 50만 원 상당액을 공제한 290만 원¹⁰⁾만 X에게 지급하도록 함
 -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X의 보험자대위권은 피해자(A)의 남은 손해액(자기부담금 50만 원)과 가해자(B)의 손해배상책임액(340만 원)의 차액(290만 원)에 대해서만 인정된다고 본 것임
 - Y는 손해배상책임액 340만 원 중 290만 원은 X에게, 50만 원은 A에게 반환하게 됨
- (쟁점) A가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의 ‘남은 손해액’으로 보아 A가 상대방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문제됨

4. 자기부담금 환급의 타당성 여부



- 자차보험도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이라는 점 및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점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2014다46211 판결에서 말하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볼 수도 있음
- 그러나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기능과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이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라는 점 등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과 손해보험이 결합되어 있는 구조로, 대인배상은 자기신체사고보험과, 대물배상은 자차보험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성하며 운영되고 있음
 - 대법원도 자동차보험약관 개별 조항의 의미와 유효성을 판단할 때 당해 담보항목 개발의 취지 및 다른 담보항목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있음¹¹⁾

10) 총 손해액(수리비 400만 원) × 피고 측 차량 책임비율(85%) - 자기부담금 50만 원

1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위 판례는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에서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수령하는 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한 액수만을 지급하기로 한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인보험에서의 보험자 대위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음. 대법원은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개발의 취지와 내용, 보험료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위 약관 조항은 상법 제729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즉,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자기의 단독사고 또는 무보험차량과의 충돌사고 등으로 보험혜택(상대방 보험에 의한 보상을 의미함)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제되는 약관 조항은 이러한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음. 또한, 이 약관 조항이 결과적으로 인보험에서 금지되는 보험자대위를 미리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는 있으나, 해당 약관 조항의 취지와 의미를 고려할 때, 결과가 위와 같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상법 제729조나 약관규제법 제6조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이 판례는 대인배상보험과 자기신체사고보험에 관한 판례이나, 현재 문제되고 있는 대물배상 - 자차보험의 관계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큼

- 이하에서는 자동차보험의 구조상 자차보험이 갖는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자차보험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및 자차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의 인식과 의사 등을 살펴봄
- (① 자차보험의 기능) 자차보험은 상대방 차량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은 본인 과실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적용됨
 - 차대차 사고로 대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과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상대방 차량이 가입한 대물배상보험에서 보상받는 것이 원칙임
 -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 설명자료도 ‘납이 낸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하면 내가 낸 자동차사고에서 내 차량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여, 자차보험의 목적이 본인 과실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음¹²⁾
 - 자차보험은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되지 않는 부분, 즉 ‘내가 낸 자동차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므로, 자차보험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도 ‘내가 낸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는 자기부담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음
- (②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자기부담금은 손해 중 일부를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함으로써 (i)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절감, (ii) 보험자의 비용 절감 및 (iii) 도덕적 해이 방지에 기여함
 - 자기부담금 약정은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액 일부를 피보험자가 스스로 부담하기로 하는 것임
 - 최소자기부담금(20만 원)과 최대자기부담금(50만 원)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 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보험자가 부담함
 - 이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의도한 것이고, 그 효과 및 반대급부도 명확하다는 점에서, 화재보험의 경우 발생하는 ‘납은 손해액’과는 차이가 있음
 -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이를 통해 (i)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고, (ii) 보험자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iii) 손해예방 및 감경에 대한 피보험자의 이익을 증대시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임¹³⁾

12) 참고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가 약관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데(각주 11,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다28245 판결 참조), 이는 인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가 금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즉, 인보험의 경우 자기신체사고보험을 통해 선처리하고 추후 상대방 대인배상으로부터 구상을 받는 방식의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신체사고보험에서 지급할 보험금에서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지급받는 보험금을 공제한다는 점을 약관 자체에서 명시한 것으로 보임. 반면, 자차보험의 경우 보험자대위를 통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아 이러한 점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됨

13) 장경환(2003), 「자동차의무책임보험에서의 음주운전사고 등에 대한 구상방식에 의한 자기부담금제 도입에 관하여」, 『보험법연구5』, 삼지원, p. 172

- 보험계약자는 손해액의 일부를 스스로 부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 보험자는 최소자기부담금 이하의 소액 손해를 면책 대상으로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보험금 및 사고 조사·처리에 따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손해액 일부를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손해 확대를 방관할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이러한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는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할 경우에만 달성할 수 있고, 만약 자기부담금을 자차보험 보험사에게 전가할 수 있다면 위와 같은 효과는 얻을 수 없게 됨
- (③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자차보험의 보험료는 상대방 과실부분은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으로 처리하고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됨
- 상대방 대물배상보험으로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피보험자가 우선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자차보험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을 변경하는 것임
 -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보험료도 그에 상응하여 인상될 것임
 - 이 경우 자차보험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할 뿐 아니라 자기부담금이 갖는 도덕적 해이 방지 기능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도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수 있음
- (④ 당사자의 의사) 보험계약자는 본인 과실로 자기 차량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되 그 손해 중 일정 금액을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함
- 자기부담금은 그 용어상 피보험자 스스로 부담할 금액이라는 점이 명확하고, 보험계약자 역시 본인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비하되 자기부담금 상당액은 스스로 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로 자차보험에 가입함
 - 이와 달리 자기부담금을 자차보험 보험사에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없을 것인 바, 만약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자차보험 보험사가 부담하도록 한다면 이는 보험계약자 측에 계약체결 시 기대하지 않은 이익을 주는 것임
 - 자기부담금을 환급하고 그 결과 자차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오히려 자기부담금을 부담함으로써 보험료 절감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합리적인 보험계약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화재보험에 관한 대법원 2014다46211판결의 내용을 자차보험에 그대로 적용하여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5. 자차보험 선처리 시 자기부담금 환급의 문제점



- 만약 자차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동일한 사고에 대해 자차보험으로 선처리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최종 손해 분담의 결과가 달라지게 됨
 - 앞서 2.항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A와 B가 처음부터 과실비율을 15:85로 정하고 보험처리를 하였다면 총 손해액 중 340만 원은 B의 대물배상으로, 60만 원은 A의 자차보험으로 보상하고, A의 자차보험으로 보상하는 60만 원에 대해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적용되었을 것임¹⁴⁾
 - 이때 당사자 간 최종 손해 분담은 A: 20만 원, X: 40만 원, Y: 340만 원이 됨
 - 그런데, 자차보험 선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보게 되면, 추후 법원에서 과실 비율이 15:85로 정해졌음에도 X는 Y로부터는 290만 원만 구상받을 수 있게 됨
 - 이때 당사자 간 최종 손해 분담은 A: 0원, X: 60만 원, Y: 340만 원이 됨
 - 즉, 선처리를 한 경우 선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X의 최종 손해 분담이 자기부담금 금액만큼 증가 하게 됨
- 자차보험 선처리는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선처리 여부에 따라 책임의 성격이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선처리로 인해 자차보험 보험사의 책임이 가중되어서는 안됨
 - 자차보험 선처리는 과실비율 다툼 등으로 인해 대물배상이 지연되는 경우 피보험자의 편의를 위해 자차보험 보험사가 상대방의 대물배상으로 처리될 금액까지 피보험자에게 선지급하는 것임
 - 즉, 선처리 하더라도 추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대물배상보험을 통해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액을 확실히 전보받을 수 있다는 전제에서 자차보험의 보험사가 그 금액을 먼저 부담하는 것임
 - 선처리로 인해 자차보험 보험사의 책임 부담이 가중된다면 자차보험 보험사로서는 선처리를 할 유인이 없어지거나 선처리 시 발생하는 부담의 증가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될 것임
 -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고 장기적으로는 보험계약자에게도 불리함

14) 참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25676 판례 사안에서 자기부담금은 총 손해액 400만 원을 기준으로 50만 원(최대자기 부담금)으로 산정되었으나, 상대방 과실비율이 85%로 인정된 경우 자차보험의 손해액은 60만 원이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자기부담금을 산출하면 자기부담금은 20만 원(최소자기부담금)으로 산출됨. 이 경우 선처리 시 부담한 자기부담금 50만 원과 최종 정산된 자기부담금 20만 원의 차액인 30만 원은 자차보험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함. 실제 실무에서는 자차 선처리 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확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정산하여 최소자기부담금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중 반환할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반환하고 있음

6. 결어



- 자차보험의 기능, 자기부담금 약정의 취지, 보험료 산출의 전제사실,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남은 손해액’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남은 손해액’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대위보다 우선한다는 대법원 2014다46211 판결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됨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뿐 아니라 전체 보험단체의 이익 및 자동차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문제는 특정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관계 측면뿐 아니라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 및 자동차보험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자기부담금 약정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들의 의사는 손해액의 일정 금액을 스스로 부담하는 대신 보험료를 절감하고 그만큼 주의를 기울여 사고 예방에 힘쓰고자 하는 것임
 -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볼 경우 자기부담금 약정이 무의미해지고, 보험료 인상 등 보험계약자 전체에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
 - 기 발생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할 것인지 여부 및 향후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약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kiri**